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 대3－6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

1. 심사보고

가. 제안일자 : 2001. 12. 6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2. 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12. 1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○ 관내 원미구 서울시계~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대로3류6호선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(중동대로~상동 지구계)은 경기도 고시 제1998－502호(98. 12. 17)로 대로3류6호선에서 대로2류6호선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되었으나

○ 상기와 같이 3류급 도로에서 일부 2류급 도로로 노선분리 되면서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외의 구간인 상동택지개발 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의 일부 도로시설이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이를 연계되도록 노선을 정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류6호선, 대로3류6호선)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서울시계~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3류6호선)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(중동대로~상동지구계)은 택지개발 승인시 대로2류6호선으로 변경결정(노폭 확장)되었으나,

○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하고, 대로3류6호선은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금번 변경안대로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을 연계되도록	○ 재검토하겠음

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 결정할 경우 계남대로와 같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요지가 있음. 신흥, 원종로 간만 연결하고 수주로, 오정대로로 차량이 빠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? ○ 변경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청취하였는가?	○ 현재 변경계획안을 공고·공람 중에 있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반대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

○ 의견서 1부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 대3－6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제549호	안건명	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대3－6)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본회의(2001. 12. 24)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대3－6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

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의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이를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하나 이 경우 인천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부천시에 교통체증

유발은 물론 투자 사업비가 과다해지므로 재검토하여야 함이 타당함

2001년 12월 24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대3－6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549호
의결년월일	2001. 12. 24 (제92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관내 원미구 서울시계～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대로3류6호선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(중동대로～상동 지구계)은 경기도 고시 제1998－502호(98. 12. 17)로 대로3류6호선에서 대로2류6호선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되었으나

○ 상기와 같이 3류급 도로에서 일부 2류급 도로로 노선분리 되면서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외의 구간인 상동택지개발 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의 일부 도로시설이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이를 연계되도록 노선을 정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류6호선, 대로3류6호선)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서울시계～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3류6호선)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(중동대로～상동지구계)은 택지개발 승인시 대로2류6호선으로 변경결정(노폭 확장)되었으나,

○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하고, 대로3류6호선은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

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대3－6)변경결정(안)

□ 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2－6,대3－6)변경결정조서(안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6	32	주간선 도로	522	광로2－4 (중동대로)	상동택지지구계(굴포천)	일반 도로	상동지구	98. 12. 17	경고 502
변경	대로	2	6	30~32	주간선 도로	805	광로2－4 (중동대로)	인천시 구역계	일반 도로	상동지구 및 굴포천		노선연장 283m
기정	대로	3	6	25	주간선 도로	5,924	서울시 구역계	인천시 구역계	일반 도로	중앙로, 도당공원	94. 7. 16	경고 198
변경	대로	3	6	25	주간선 도로	5,605	서울시 구역계	광로2－4 (중동대로)	일반 도로	중앙로, 도당공원		대로2－6변경에 따른 연장축소

□ 변경결정 사유

○ 서울시계~인천시계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3류6호선)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구간(중동대로~상동지구계)은 1998년 12월 택지개발 승인시 대로2류6호선으로 변경결정(노폭확장 : 25 → 32m, 연장 : 522m) 및 노선분리 되었으나

○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결정하고, 대로3류6호선은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함

□ 참고사항

○ 도시계획 용도지역·구역·지구 : 자연녹지지역, 일반주거지역, 최고고도지구

○ 시행시기 : 2002. 1~2005. 12월

○ 시행자 : 부천시장(도로과) 및 토지공사(상동택지개발지구 내)

○ 도로(대로2류6호선) 편입토지 현황

• 소유자별 편입토지 현황

구 분	계	국유지 (건교부)	시유지	사유지	기 타 (농업기반공사)	비 고
면 적(㎡)	8,146.7	6,750.7	211.4	868.3	316.3	

필 지 수	25	13	5	5	2	
구성비(%)	100	82.9	2.6	10.6	3.9	

• 지목별 편입토지 현황

구 분	계	답	구거	도로	대지	전	잡	비고
면 적(㎡)	8,146.7	7,019	828.1				299.6	
필 지 수	25	15	8				2	
구성비(%)	100	86.1	10.2				3.7	

○ 추정 소요사업비

구 분	총 사 업 비	보 상 비	시 설 비	부 대 비
금액(천원)	2,047,853	153,861	1,456,917	437,075

○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02.	2003.	2004.	2005.
계	2,047,853		511,963	511,963	511,963	511,964
시 비	2,047,853		511,963	511,963	511,963	511,964

○ 도시계획 변경결정권자

• 도로(노폭 25미터 이상)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기대효과

○ 동서 간을 잇는 도로개설로 주변 상동택지개발지구와 인천시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통행 원활 도모

○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

부천시도시계획 총괄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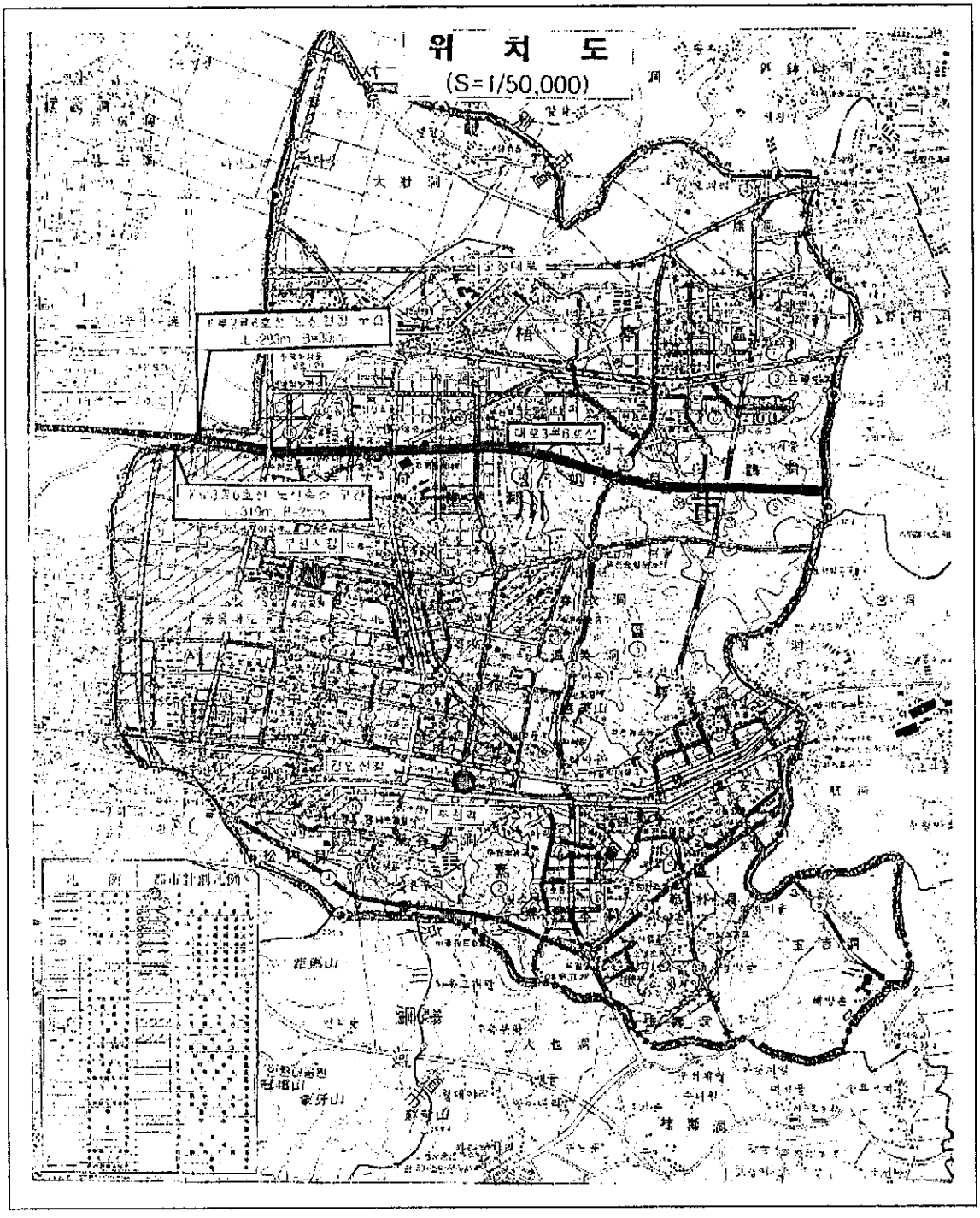
(축척 = 1:50,000)